

수단 (Sudan)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가입대상	해외근로국민 적용제외	해외근로국민 임의적용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율 (근로자 / 자영자 / 사용자)	8% / 25% / 17%	8% / 25% / 17% * 임의가입자 23%	
보험료 부과 상한 / 하한소득	20,000 / 1,500 pounds	20,000 / 1,500 pounds	-
연금수급 개시 연령	65세	65세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0년	20년	-
노령연금 지급율(40년 기준)	83.33%	83.33%	-
일시금	X	X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19년(연금조례), 1974년(사회보험)
- 현행법 : 2016년(사회보험)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공공 및 사적 부문 근로자, 자영자
- 적용제외 : 가사근로자, 가족종사원, 재택근무자, 농부 및 산림노동자, 무보수 견습공
- 임의적용 : 해외에서 근로하는 국민
- 특별제도 : 판사, 군인 및 경찰

4 재원조달

- 가입자 : 월 소득의 8%
- 임의가입자 : 월 소득의 23%
- 자영자 : 월 신고 소득의 25%

- 하한/상한소득 : 1,500 pounds / 20,000 pounds
- 자영자의 납부 보험료는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
- 사용자 : 월 소득의 17%
- 정부 : 없음 (사용자로서 납부)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최소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도달자
 - 위험직종 종사자는 조기퇴직 가능
 - 퇴직은 필수요건
 - 조기연금 :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50세 도달(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비자발적 실업 시 연령 상관없음)
- 장애연금
 - 65세 미만으로 완전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전년도에 가입 중이었던 자(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노령이나 장애 연금수급자였거나, 연금수급자격이 있는 자
 - 유족범위 : 배우자, 미혼이며 근로하지 않는 딸, 18세 미만 아들(학생인 경우 26세 미만, 장애 있는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부양 부모, 18세 미만의 부양 남자 형제(학생인 경우 26세 미만, 장애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혼이며 근로하지 않는 여자형제
- 사망보조금 : 가입자나 연금수급자 사망 시 지급
 - 유족범위 : 배우자, 미혼이며 근로하지 않는 딸, 18세 미만 아들(학생인 경우 26세 미만, 장애 있는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부양 부모, 18세 미만의 부양 남자 형제(학생인 경우 26세 미만, 장애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혼이며 근로하지 않는 여자형제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 12개월 당, 퇴직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2% 지급
 - 최저연금액 : 퇴직 전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40%
 - 최고연금액 : 퇴직 전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83.33%
 - 연금은 부분적으로 일시금 수급 가능
 - 조기연금
 - 50세~54세 : 15%까지 감액

- 55세~59세 : 10%까지 감액

○ 장애연금

- 장애 발생 전 3년간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0% 또는 보험료 납부 12개월 당 같은 소득월액의 2% 중 더 많은 금액 지급
- 최고연금액 : 장애 발생 전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83.33%

○ 유족연금

- 배우자 :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30% 지급;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의 50%; 고아나 부모는 없으나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 75%;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100%; 한 명 이상의 배우자(미망인)가 있는 경우 균분 지급
- 고아 :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40%를 수급자격 있는 고아들에게 균분 지급;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금액의 50%; 배우자는 없으나 부모가 있는 경우 70%;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는 100%
- 부모 :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30% 지급; 배우자 또는 고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50%; 배우자 또는 고아는 없으나 수급자격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75%;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는 100%
- 유족연금의 합산금액은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장애연금액을 초과할 순 없음

- 사망보조금 : 사망 당시 가입중인 경우는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4배 금액; 사망자가 연금수급자인 경우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2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보험사회개발부(Ministry of Insurance and Social Development)

- 전반적 감독

○ 국민연금사회보험기금(National Pensions and Social Insurance Fund)

- 보험료 징수 및 제도운영

<2019년 ISSA 자료>